

『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10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10월 29일

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과장 장 덕 수

나. 제안이유

-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캠핑장 이용율이 낮은 일부 법정공휴일을 휴장일로 지정하고
- 초과사용시간 및 사용인원을 규정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레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○ 캠핑장 개장일 변경(안 제4조)

- 당초 : 연중무휴 → 변경 : 연중무휴(설날 당일, 추석 당일 휴무)

○ 초과사용시간 규정(안 제5조)

- 당초 : 퇴실시간 초과 후,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
- 변경 : 퇴실시간 초과 후, 3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

○ 사용인원 규정(안 제5조)

- 당초 : 카라반(6인), 평상(8인)
- 변경 : 카라반(6인), 오토캠핑(8인), 일반캠핑(6인), 평상(8인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

「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」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중 우

○ 본 「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법정공휴일을 휴장일로 지정하고 초과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캠핑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생계·주거급여 대상자와 한부모가족이 제외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